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모집 공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 상인의 위기 극복을 위하여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 체결의 적극적 동참 유도 및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하고자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7월 19일

서대문구청장



1. 사업명 :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2. 지원대상 : 상가 임차인과 '21년 임대료(관리비, 부가세 제외) 인하 상생협약 체결 임대인

○ 「상가임대차법」 적용받는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 서울소재 상가·점포

※ 환산보증금(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 보증금+(월세×100)

〈 착한임대인 지원 요건 〉

- ◆ 「상가임대차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일 것
 - ※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건물
- ◆ 상가 임차인이 영업 목적으로 계속 사용 중일 것
 - 동창회, 종교단체, 자선단체 사무실 등 비영리단체의 임대차 제외
 - 단순 물품 보관 창고, 사무업무를 위한 일반 사무실 용도는 제외
- ◆ 임대차 관계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임원·사용인 등
- ◆ 임차인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14) 세액공제 배제업종이 아닐 것
 - 사행행위, 과세유형업 등

3. 지원내용 : 임대료 인하 구간별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상품권)’ 지급

- 임대인이 소유한 다수의 상가건물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각각의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액을 합산하여 인하 구간 적용

총 임대료 인하 구간	상품권 지원금액
1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30만원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50만원
1천만원 이상	100만원

- 상반기 상품권 지급받은 임대인이 추가로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기존 임대료 인하액에 금번 임대료 인하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구간별 금액 적용

〈상품권 추가지급 적용기준(예시)〉

- ◆ 상반기 때 임대료 100만원 인하하여 상품권 30만원을 지급받고, 추가로 100만원을 인하했을 경우
 - 임대료 인하액이 총200만원으로 상품권 지급액 30만원 해당 ⇒ 추가 지급 상품권 없음
- ◆ 상반기 때 임대료 100만원 인하하여 상품권 30만원을 지급받고, 추가로 400만원을 인하했을 경우
 - 임대료 인하액이 총500만원으로 상품권 지급액 50만원 해당 ⇒ 추가 상품권 20만원 지급
- ◆ 상반기 때 임대료 1,000만원 인하하여 상품권 100만원을 지급받고, 추가로 100만원 인하했을 경우
 - 상품권 지급액은 최대 100만원까지로 추가 상품권 지급 없음
- ◆ 공동소유 상가 건물의 경우 하반기 때 다른 소유자 명의로 상품권 신청할 경우
 - 상가 건물 공동 소유자 A, B가 있을 경우 상반기 때 임대료 100만원 인하하여 A가 상품권 30만원을 받았을 경우, 추가 임대료 100만원 인하하여 B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지급 불가

4. 신청방법

가. 접수방법 : 우편(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중 택일

나. 접수처 : 서대문구청 5층 일자리경제과(서대문구 연희로 248)

- 임대료 인하 상가가 2개 이상 자치구에 소재한 경우 임대료 인하 금액을 합산하여 임대료 인하 상가 소재 자치구 중에 1개 자치구에 신청

(예시) 상가 임대인이 서대문구, 중구에 소유하고 있는 상가 건물의 임대료를 인하했을 경우 서대문구, 중구 상가 임대료 인하 금액을 합산하여 서대문구로 신청(서대문구, 중구로 각각 신청하지 않음)

다. 제출서류

〈신청 시〉

- 상생협약서(붙임 1), 착한임대인 지원 신청서(붙임 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 5) ※임대인, 임차인 각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
- ※ 공동 소유일 경우 1인이 대표 신청 : 위임장 및 위임 증빙자료(위임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등)

〈상생협약 완료 시〉

- 임대료 인하 여부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입금내역, 임대료 전액인하 확인서 등)

라. 신청기간 : '21.7.19.(월) ~ '21.8.31.(화), (평일 09:00~18:00)

- 지원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신청인원 수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마. 선정결과 : 임대인에게 유선 또는 문자 등 통보(9월 중순 예정)

5.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상품권을 수령할 경우 지급된 상품권 가액에 해당하는 현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반납해야 합니다.

나. 상생협약 기간 중 기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해지 후 신규 임차인에게도 상생협약 내용을 승계해야 합니다. 승계되지 않은 경우 잔여기간에 상응하는 금액 및 이자를 현금으로 반납해야 합니다.

다. 상품권을 지급받은 임대인이 상생협약 기간 중 매매 등으로 인해 건물 양도 시 상생협약 내용을 신규 건물주(임대인)에게 통지하고, 신규 건물주(임대인)는 상생협약 내용(임대료 인하)을 승계하여야 합니다. 승계되지 않는 경우 전 임대인은 협약 잔여기간에 상응하는 금액 및 이자를 현금으로 반납해야 합니다.

라. 임대인은 상생협약 이행 종료 시(제출기한: '21.12.30.까지) 상생협약 이행(임대료 인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임대료 지급 관련 자료(세금계산서, 입금내역 등)를 해당 신청 자치구에 제출해야 합니다.

- ※ 부정 수령, 협약 미이행 등 관련해서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마. 지급되는 서울사랑상품권은 모바일상품권으로 본인 스마트폰에 상품권 서비스 이용 가능한 APP(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신청 시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이 아닌 경우 상품권 발송이 되지 않습니다.

* 서울사랑상품권 문의 제로페이 고객센터 1670-0582/서울시 다산 콜센터 120 또는 웹사이트(<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11539>) 참조

바. 임차인의 업종이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제외 업종(붙임 6)에 해당될 경우 착한임대인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6. 기타사항

가. 신청서 등 제출서식은 서대문구 홈페이지(<http://www.sdm.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서대문구 홈페이지 → 고시공고 → 검색창(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나. 기타 사항은 서대문구 일자리경제과(☎330-49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상생협약서 1부.
2. 착한임대인 지원 신청서 1부.
3. 위임장 1부.
4. 임대료 전액인하 확인서 1부.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6.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임차인 제외 업종 1부. 끝.

상 생 협 약 서

임대인 _____과(와) 임차인 _____ 외 _____명 서대문구는 코로나19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고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심하고 소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상권 활성화 도모를 위해 상호 노력하며 다음과 같이 상생협약을 체결한다.

1.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상생을 위해 다음과 같이 월세(월임대료)를 인하하기로 한다.
2. 임대인 및 임차인은 상생협약 의무이행 여부 점검(입금내역 제출 등)에 적극 협조한다.

○ 임대료 인하 내역

- 상가건물 소재지 :

임대인	성 명 :			주민등록주소 :			사업자등록 번호:		
	생년월일 :			연 락 처 : (본인명의 스마트폰 번호)					
임차인 성명	연락처	점포명 (층, 호수)	점포면적 (㎡)	보증금/월세 (원)	환산 보증금 (원)	월임대료 총 인하액 (원)	임대료 인하기간	사업자등 록번호	서명 또는 인
홍길동	000-0000 -0000	○○ (1층,101호)	38	50,000,000 /2,000,000	250,000,000	1,000,000	'21.1.~5.	000-00 -00000	

※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2021년 월 일

임대인 _____(인)

임차인 _____(인)

서대문구(인)

임차인 _____(인)

임차인 _____(인)

착한임대인 지원 신청서

본인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가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아래와 같이 임대료를 인하(확약)하고 착한 임대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상생협약 미준수, 부정수급 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착한 임대인 지원으로 받은 상품권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자를 현금으로 반납조치 함

○ 서울사랑상품권 신청금액(해당사항에 표시)

구분	신청	임대료 총 인하금액	상품권 신청금액
필수 사항	<input type="checkbox"/>	1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30만원
	<input type="checkbox"/>	5백만원 이상-1천만원 미만	50만원
	<input type="checkbox"/>	1천만원 이상	100만원
선택 사항	<input type="checkbox"/>	부동산 APP(앱)에서 착한임대인 건물 홍보	
	<input type="checkbox"/>	언론보도·인터뷰 참여(익명 가능)	

○ 상가 소재지 :

○ 임대료 인하 내역 : 상생협약서 첨부

신청인(임대인) : _____ (서명 또는 인)

사업자번호 : _____

연락처(휴대폰) : _____

※ 필히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번호 기재

서대문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상생협약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4. 개인정보제공동의서 5. 위임장 및 위임증빙 서류
6.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7. 임대료 인하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세금계산서, 입금내역 등/협약완료 시 제출)

붙임 3

위 임 장			
수 임 인 (대리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위임자와 관례	<input type="checkbox"/> 가족 <input type="checkbox"/> 직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주 소		
<p>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서울특별시가 추진하는 2021년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신청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1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font-weight: bold;">서대문구청장 귀하</p>			
위 임 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주 소		
위 임 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주 소		
위 임 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주 소		
<p>붙임 : 위임 증빙 자료(위임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등) 1부.</p>			

임대료 전액인하 확인서

임대료 인하내용

상가 소재지	
면적 (m ²)/상가호수	m ² /
상호명(임차인)	
사업자등록번호(임차인)	
임대료 총 인하금액	원
임대료 인하기간	개월(2021. . . ~ 2021. . .)

○ 상기 상가건물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협력을 통한 위기극복을 위하여 위와 같이 임대료를 인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임대료 인하내용이 위 사실과 다를 경우 임대인은 지급받은 서울사랑 상품권 금액에 해당하는 현금 및 이자금액을 반납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은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1년 월 일

- | | | |
|-------|----|-----------|
| ○ 임대인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임차인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서대문구청장 귀하

붙임 5 ※임대인, 임차인 각 1부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수집·이용 목적

- 서울특별시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신청자격 확인 및 접수, 선정 및 지원, 사후 관리 등을 위하여 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선정일로부터 5년 보관 후 폐기

개인정보 수집·활용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임대인, 임차인 관련 성명/주민번호/생년월일/연락처/주소/ 통장사본/기타 등 기본적 개인정보 기재 사항 ◦대리인 성명/주민번호/주소/연락처 ◦가족관계증명서 조회(임대차인 특수관계 여부 확인)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접수는 불가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1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서대문구청장 귀하

붙임 6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제외 임차인 업종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임차소상공인의 업종
(제96조의3제3항제3호 관련)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업종

업종분류	분류코드	세액공제 적용배제 업종
가. 제조업	C33402	영상게임기 제조업(도박게임 등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영상게임기로 한정한다)
	C33409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도박게임 등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오락용품으로 한정한다)
나. 정보통신업	J5821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도박게임 등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게임소프트웨어로 한정한다)
다. 금융 및 보험업	K64	금융업
	K65	보험 및 연금업
	K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업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7항에 따른 온라인 소액투자중개 및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무를 업으로 영위하는 업종 중 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66199)은 제외한다]
라. 부동산업	L68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6821) 및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은 제외한다]
마.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O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바. 교육 서비스업	P851	초등 교육기관
	P852	중등 교육기관
	P853	고등 교육기관
	P854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사.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아.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94	협회 및 단체
자.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T97	가구 내 고용활동
	T9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차. 국제 및 외국기관	U99	국제 및 외국기관

비고: 업종분류, 분류코드 및 세액공제 적용배제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